

2017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176억 8천만원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계	17,680,066	17,680,066	-	-
세외수입	4,194,200	4,194,200	-	-
경상적세외수입	269,757	269,757	-	-
재산임대수입	44,399	44,399	-	-
사용료수입	225,358	225,358	-	-
임시적세외수입	3,924,443	3,924,443	-	-
기타수입	3,924,443	3,924,443	-	-
국고보조금	13,485,866	13,485,866	-	-
국고보조금등	13,485,866	13,485,866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보전수입등	-	-	-	-
전년도이월금	-	-	-	-

2. 세출예산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507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612억 8백만원 대비 18.6%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161,208	3,750,729	589,521	18.6%	
행정관리	소 계	3,161,208	3,750,729	589,521	18.6%
	행정운영경비	300	300	-	-
	재무활동	200	200	-	-
	사업비	3,160,708	3,750,229	589,521	18.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6.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764,845	2,764,845	3,354,366	589,521	21.3%
지방세 전출	1,110,455	1,110,455	1,326,787	216,332	19.5%
담배소비세 전출	285,415	285,415	358,097	72,682	25.5%
지방교육세 전출	1,361,334	1,361,334	1,660,841	299,507	2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7,641	7,641	8,641	1,000	13.1%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10억원, “지방세 전출” 2,163억 3천 2백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726억 8천 2백만원 및 “지방교육세 전출” 2,995억 7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895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에 76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마을 방과후교실 강사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641,390	7,641,390	1,000,000	
사 무 관 리 비	141,390	141,390	0	
자치단체경상보조	8,500,000	7,500,000	1,000,000	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 ※ 22개구('17) ← 20개구('16) ← 11개구('15)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총사업비 : 323억원 (서울시 93억원(조례상전출금17억원포함), 교육청 102억원, 자치구 128억원)

- 본 사업의 증액 편성은 2,500여명의 마을강사에 대한 강사료(수업당 1만원)와 재료비(수업당 1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의 마을강사 중 대다수의 소득이 월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금번 예산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소득 현황 〉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501명	2,093명	213명	113명	82명
100%	83.7%	8.5%	4.5%	3.3%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활동 현황 〉

인원	시간당 강사비	프로그램 수	수업분야
2,501명	3~7만원	1,398	연극, 성악, 뮤지컬, 서예, 악기, 디자인 등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강사 수당 : 보조강사(3만원)
- 중학교협력종합예술 강사비 : 4.3만원(예술강사조합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 일반3급(8만원), 보조강사(4만원)

- 다만, ① 재료비(강의자료, 교육자료 등 포함) 소요현황에 대한 조사없이 추가 예산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② 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료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강사료 상향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강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일률적 증액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 ④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을강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중 재료비·강의자료·교육자료 사용 프로그램의 조사사항 없음.

※ 평생교육정책국의 세부 산출기초

- 세부산출기초 2,500명 * 20,000원 * 월4회 * 5월 = 1,000,000
- 마을교사 : 22개 자치구 2,500명, 추가지원액 : 강사비 인상분(1만원)+재료비 지원(1만원)

나.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6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2,163억 3천 1백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출금(726억8천 2백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2,995억 7백만원) 등 총 5,885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 전출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45,725,037	2,757,203,640	588,521,397	
지 방 세 전출	1,326,787,133	1,110,455,345	216,331,788	'16년도 시세 정산금
담배소비세 전출	358,097,169	285,414,750	72,682,419	'16년도 시세 정산금
지방교육세 전출	1,660,840,735	1,361,333,545	299,507,190	'16년도 시세 정산금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이하 ‘법정전출금’)은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 법령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법령²⁾과 조례³⁾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90%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임.

〈 2016년 서울시결산 기준 전출액 산정 〉 (단위 : 백만원)

세목	2016년 전출대상액	2016년 전출액	정산금
합 계	3,010,531	2,422,010	588,521
보통세	1,221,919	1,005,587	216,332
취득세	490,882	-	-
레저세	13,896	-	-
담배소비세	66,119	-	-
지방소비세	103,861	-	-
주민세	5,378	-	-
지방소득세	424,420	-	-
자동차세	117,362	-	-
담배소비세	297,537	224,854	72,683
지방교육세	1,491,076	1,191,568	299,50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3)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2016년 법정전출금 월별 전출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예산액현액	2,773,199	1,205,928	249,091	1,318,179	
편성액	2,461,336	1,046,722	223,045	1,191,569	
지출내역	소계	2,422,010	1,005,587	224,854	1,191,568
	1차 (02.29.)	206,913	78,592	25,087	103,234
	2차 (03.31.)	178,369	90,989	19,573	67,807
	3차 (04.29.)	129,457	56,425	19,387	53,645
	4차 (05.31.)	170,118	93,686	22,676	53,756
	5차 (06.22.)	0	0	0	0
	6차 (06.30.)	283,291	189,458	22,232	71,601
	7차 (07.29.)	207,705	81,419	22,690	103,596
	8차 (07.29.)	130,651	65,619	14,626	50,406
	9차 (08.31.)	257,256	68,624	23,083	165,549
	10차 (09.30.)	217,957	100,528	22,881	94,548
	11차 (10.28.)	394,948	72,404	22,495	300,049
	12차 (11.30.)	163,975	76,894	8,315	78,766
	13차 (12.26.)	432,559	231,290	26,046	175,222
	14년도 정산분	-311,864	-159,207	-26,046	-126,611
	15년도 정산분	-39,325	-41,134	1,809	

※ 5차(06.22.) 전출은 학교용지부담매입금 전출로 전출금 226억 6백만원을 전액 전출함.

다. 간주처리

- 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2개의 자치구가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조성(특성화)”사업에 1억원, 10개 자치구가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2억 4천 2백만원 등 총 3억 4천 2백만원을 간주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였음.

※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 읍·면·동까지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 완성하여 국민학습권 보장
- 대상 : 지방자치단체
- 내용 :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으로 시·도·시·군·구 연계강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구축
- 2017년도 교육부의 추진사업비 : 4,479백만원

〈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선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자체명	국고 지원액
평생학습도시 조성(특성화)	서울 서대문구	50,000
	서울 금천구	50,000
총 계		100,000

〈 교육부의 “행복학습센터 운영” 선정 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명		국고 지원액
구분	시군구	
계속	서울 성동구	30,000
	서울 중랑구	34,650
	서울 도봉구	34,650
	서울 양천구	31,500
	서울 관악구	31,500
신규	서울 종로구	19,800
	서울 중구	22,000
	서울 용산구	16,192
	서울 광진구	13,200
	서울 동대문구	8,160
총 계		233,492

○ 간주처리는 예산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시행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이 승인된 것(각 회계연도 마다 예산 의결시 사전 동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2016년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총칙 중 간주처리조항이 삭제되어 ‘성립전 예산제도’를 사용하였고, 2017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서울시는 간주처리하고 있음.

〈 간주처리 개요 〉

- 정의 : 예산총칙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의회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 후 의회보고**
- 근거 : 법령 근거 없음.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근거로 삼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125p 발췌)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 2017회계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0조 2017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 성립전 예산 개요 〉

- 정의 : 국고보조금 등을 **선집행 후** 추경계상·편성으로 **의회의 사후 동의 필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등의 운영방식 변경 내역 〉

	간주처리		성립전예산 사용		간주처리	
	2015년 예산운영		2016년 예산운영		2017년 예산운영	
	국비운영	사후관리	국비운영	사후관리	국비운영	사후관리
전액국비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구비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민간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기편성된 시비매칭사업 (시비 추가부담 없는 경우)	간주처리	의회보고	성립전사용	추경계상	간주처리	의회보고
기편성된 시비매칭사업 (시비 추가부담 필요 경우)	간주처리	의회보고	추경편성	추경편성	간주처리	의회보고
신규 시비 매칭사업	간주처리	의회보고	추경편성	추경편성	간주처리	의회보고

○ 간주처리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 사전의결 원칙 및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만 표기하고 정확한 보고가 없고, 법령에 근거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이 논의되는 시점인 6월말(2017.06.28. 제7차 간주처리⁴⁾)에 이를 간주처리한 점에서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간주처리를 최소화하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페이지
 -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역 중 제7차 간주처리(2017.6.28.)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0,000천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241,652천원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7. 6. 30 기준)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등 8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7.6.30.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용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597,380	279,346	1,318,034	82.5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37,100	7,154	29,946	80.7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2,346,195	459,129	1,887,066	80.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70,000		70,000	100.0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223,000	15,442	207,558	93.1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134,000	8,616	125,384	93.6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0,000		100,000	100.0
행복학습센터 운영	241,652		241,652	10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6,796,700	304,689	6,492,010	95.5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3,000,000	7,838	2,992,163	99.7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357,000		357,000	100.0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60,000		60,000	100.0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2,859,887		2,859,887	100.0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운영	62,611	8,180	54,432	86.9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46,000		46,000	100.0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000		100,000	10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5,025,478	914,963	4,110,516	81.8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